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 제 4 민 사 부

## 판 결

| | |
|---|---|
| 사 건 | 2014나55993 부당이득금 |
| 원고, 항소인 | 1. [redacted] |
| | 2. [redacted] |
| 피고, 피항소인 | [redacted]도 |
| 제 1 심 판 결 | [redacted]중앙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가소546644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10. 31. |
| 판 결 선 고 | 2018. 12. 12. |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파산자 [redacted]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7,256,000원, 원고 파산자 [redacted]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944,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2010.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1

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redacted]건설 주식회사(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는 [redacted]저축은행㈜[1]와 [redacted]저축은행㈜[2]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redacted]시 [redacted]동 876-5 외 3필지 지상 집합건물인 코디클럽 중 제105, 107, 108, 109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비롯한 합계 20개 호수에 관하여 [redacted]건설㈜를 위탁자, [redacted]부동산신탁㈜를 수탁자, [redacted]저축은행㈜ 및 [redacted]저축은행㈜를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와의 여신거래계약을 위반할 경우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해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제17조 제1항), 이 때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찰시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 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redacted]저축은행㈜, [redacted]저축은행㈜은 [redacted]건설㈜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redacted]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였고, 공매절차에서 4차례 유찰을

---

1) 2010. 9. 3. [redacted]상호저축은행㈜에서 [redacted]저축은행㈜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3. 5. 20. [redacted]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2010. 9. 3. [redacted]상호저축은행㈜에서 [redacted]저축은행㈜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3. 7. 1. [redacted]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1

거쳐, [redacted]저축은행㈜(매수 지분 89.875/100), [redacted]저축은행㈜(매수 지분 10.125/100)는 2010. 12. 28. 위 각 부동산을 대금 합계 16억 원에 공동매수하고, 2010. 12. 29.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취득'이라 한다).

[redacted]저축은행㈜, [redacted]저축은행㈜는 2010. 12. 29. 위 소유권취득에 관하여 [redacted]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게 등록세율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등록세 16,000,000원, 지방교육세 3,200,000원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관련규정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3)]**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후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3) 위 전부개정된 지방세법(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1. 1. 1.부터 시행되고, 위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위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이 이 사건 소유권취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1

**제133조 (신탁재산등기의 세율)**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부동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후략)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구분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
| 1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 100분의 20 |

## 3.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들의 주장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에 대한 등록세율은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에 따라 1,000분의 10이다. 그럼에도 [redacted]저축은행㈜과 [redacted]저축은행㈜은 착오로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1,000분의 20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설령 위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 하더라도,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는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의 금전급부관계에 불과하여 이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 및 납부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고,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그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들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원고들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히 부당하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에게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1

납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등록세율의 감경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는 수익자를 위하여 설정되었던 신탁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수익자에게 당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유권취득은 [redacted]저축은행㈜과 [redacted]저축은행㈜이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수한 경우로서, 위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4.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의 등록세율의 적용 여부**

먼저 이 사건 소유권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의 등록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는 신탁재산의 이전의 원인에 상관없이 단순히 '신탁재산이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redacted]부동산신탁㈜으로부터 우선수익자인 [redacted]저축은행㈜, [redacted]저축은행㈜으로 이전된 이 사건 소유권취득에 대하여도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의 등록세율이 적용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1

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39850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231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거나 중대명백설의 예외로서 이를 당연무효로 볼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의 당초 입법취지는 신탁관계가 종료되면서 신탁관계에 근거하여 해당 신탁재산이 수탁자에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도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신탁관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공매 등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한 일반적인 매수절차를 이용하여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이전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1

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 등 참조할 만한 선례가 없었고 위와 같은 기존의 실무례를 고려할 때, 피고에게는 이 사건 소유권취득에도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가 적용된다는 해석이 명백하였던 경우라고 볼 수 없다.

② [redacted]저축은행㈜, [redacted]저축은행㈜이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어떠한 유도나 종용 또는 권유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를 비롯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이 일반적인 처분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운용해 왔고 위 은행들도 그러한 해석을 좇아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위 은행들과 같은 금융기관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지위가 아니라 통상의 매수인의 지위에서 일반적인 매수절차를 통해 신탁재산을 매수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유상취득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실제 등록세 등 신고·납부시 증명서류로 매매계약서와 잔금영수증 등이 제출될 뿐 신탁계약서는 제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해석도 상당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금에 와서 그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③ 위 은행들은 금융기관으로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부동산의 유상취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와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신고·납부 후 약 3년이 지난 2013. 12. 27. 위 은행들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경정청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1

및 환급요청을 할 때까지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은행들으로서도 이 사건 소유권취득에 구 지방세법상 감경된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도 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감경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동산의 유상취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④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는 농지 이외 부동산의 유상취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등록세율에 대한 일종의 특례규정으로서,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경규정을 삭제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송인권

판사 유아람

판사 이지영